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탄소발생 저감의 필요성과 생활속 실천방법 및 체험·교육을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 기후변화 전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 기후변화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다. 관람시간 및 휴관(안 제5조 ~ 제6조)

-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
-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1월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으로 함.

라.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교육·홍보·실천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마. 운영지원(안 제11조)

-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자치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기 타 : 조례안 붙임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이하 “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남통동 200-2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에 관한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2.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3.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4.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후변화체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람료 등) 체험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수강생에게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① 체험교육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① 체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
2. 체험교육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교육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체험교육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교육관 내 전시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의 교육·홍보·실천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체험교육관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전문개정 2008.12.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⑥ 생략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체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제3조)

- 기후변화에 대한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 그 밖에 구미시장이 기후변화체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체험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제11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 (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2013.3.26)에 따라 원가산정의 구성요소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기본으로 한다

나.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준공이 2014년 2월 예정 이므로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 2014년 292,100천원을 포함하여 2018년까지 1,625,22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천 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 출	292,100	318,654	328,213	338,059	348,200	1,625,226

☞ 1차년도 : 11개월분 비용 / 2차년도 이후 매년 인상률 3%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구 분 \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60,000	60,000	60,000	60,000	240,000
도 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시 비	262,100	228,654	238,213	248,059	258,200	1,235,226
기 타						
합 계	292,100	318,654	328,213	338,059	348,200	1,625,226

5. 부대의견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녹색정책담당관실 김은화
연 락 처	(054)480~656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시설운영 및 관리, 행정업무 등에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원가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노무비 — 176,249 천원

- 행정업무 : 27,091 천원 × 1 명 = 27,091 천원
21,673 천원 × 1 명 = 21,673 천원
 - 시설관리 : 37,183 천원 × 1 명 = 37,183 천원
 - 체험관 안내 및 해설 : 21,673 천원 × 2 명 = 43,346 천원
 - 환경미화원 : 23,478 천원 × 2 명 = 46,956 천원
- ※ 제조부문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및 전기정비공 임금을 근거로 산출

2. 경 비 — 127,231 천원

- 전력비 : 시설규모와 예상 수요를 기초로 산출
일반용 전력(을)—고압A 4,530,800원 × 12 = 54,370 천원
- 상하수도,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 10,266 천원
- 감가상각비, 보험료, 기타경비 등 : 29,595 천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 33,000 천원

3. 일반관리비 — 15,174 천원

- ※ 용역원가의 5% 적용